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346

발의연월일: 2021. 9. 1.

발 의 자:김병욱·고용진·김예지

김종민 • 민병덕 • 박성준

서동용・송재호・양향자

이상헌 • 이성만 • 이원욱

정성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비라는 용어는 유흥, 오락 등불건전한 활동과 지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므로 기업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지출하는 공식비용인 접대비의 인식을 바로잡기 위하여 용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건전한 기업활동의 이미지 제고와 접대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 1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235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 4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 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6호 중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
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6. <u>대외활동비</u>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	
액	
7. • 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